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 적 재 조 사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도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측량장비와 1,000명 이상의 지적분야 측량기술자를 갖춘 법인으로 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을 “(측량·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로, “대행하게 할”을 “위탁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수행자에게”를 “책임수행기관에”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⑤ 대행계약의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및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

을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을 말한다) 이상이 상근할 것

③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및 측량장비의 적정성

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도지사 및 책임수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5(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①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의 설치·운영

나. 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의 업무 자문

다.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u>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u> 2. 3. (생략) 4. <u>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u>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u>통지하여야</u> 한다. <신설>	제4조(측량·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 -----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 ----- <u>위탁한</u> ----- ----- -----. 1. <u>책임수행기관</u>----- 2. 3. (현행과 같음) 4. <u>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u> ----- ----- ② ----- <u>책임수행기관에</u> ----- ----- <u>통지해야</u> -----. ③ <u>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신 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 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 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 ⑤ 대행계약의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
 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
 공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자

가.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
 기 위한 조직 및 측량장비
 를 갖추고 있을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
 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
 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
 명(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
 역별로 200명을 말한다)
 이상이 상근할 것

③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및 측량장비의 적정성

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

<신 설>

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도지사 및 책임수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요건

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
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
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
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5(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①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
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
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
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 · 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 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u>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u> <u>기 위한 행정지원반의 설</u> <u>치·운영</u> <u>나. 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u> <u>의 업무 자문</u> <u>다. 측량소프트웨어 지원</u> <u>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u> <u>필요한 기술 지원</u> <u>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u> <u>개발</u> <u>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u> <u>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u> <u>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u> <u>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u> <u>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u> <u>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u> <u>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 ----- ----- ----- ----- -----
--	--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 2. (생 략) <u>2의2.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공</u> <u>고</u> <u><신 설></u> 3. ~ 10.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u> <u>지정취소</u> <u>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u> <u>(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u> <u>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u> <u>채지</u> 3. ~ 1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660